

<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확대시행 안내 >

2022년도 1월 1일부터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확대될 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.

○ (시행시기) 2022. 1. 1.(신청일자 기준)

○ (세부내용)

| 구분 | 현 행 (~21.12.31.까지) | 확대 후 (22.1.이후~) |
|------|--|--|
| 지원대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신·출산(유산·사산 포함)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(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·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신·출산(유산·사산 포함)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·유아의 법정대리인(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·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) |
| 지원금액 | 임신 1회당 일태아 <u>60만원</u> / 다태아 <u>100만원</u> (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) |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/ 다태아 140만원 (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) |
| 지원항목 | 임신·출산 관련 진료비 및 <u>처방에</u> 의한 약제·치료재료 구입비 | 모든 진료비 및 약제·치료재료 구입비 |
| 사용기간 | 신청일~출산일(유산·사산일) 이후 <u>1년</u> | 이용권 발급일~출산일(유산·사산일) 부터 2년 |

○ (유의사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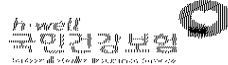
- 기 등록된 임신·출산 진료비 신청 건은 취소 삭제 불가(당일 신청 건 포함)
-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잔액은 자동소멸 되며 또한 사용기간 내 재임신한 경우에도 기존 바우처 잔액은 사용 불가

예시) 임신확인일(2021.6.7.) 분만에정일(2022.2.11.)인 임신부가 2021.6.16. 임신·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려던 중 확대될 제도에 대해 안내받고 내년 2022.1.2. 신청하였을 시 지원금 100만원 지급되며 2024.2.11. 지원종료일까지 적용됨.



보건복지부

129



h·well 국민건강보험

1577-1000